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1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5 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대금을 74%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예산의 부족으로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상수도사용료 요율 조정(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2)
 - 톤당요금 528원에서 738원으로 40% 인상 조정

3. 참고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- 근거법령 : 수도법17조
-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99-261호('99.12.1~'99.12.20)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6조제1항중 “별표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

업종별		요금	비고	
구분	단계별	(원)		
가정용	기본(0~10㎡)	3,690		
	초과	11 ~ 20	580	
		21 ~ 30	750	
		31 ~ 40	950	
		41 ~ 50	1,140	
		51이상	1,270	
업무용	기본(0~20㎡)	12,570		
	초과	21 ~ 50	750	
		51 ~ 100	930	
		101 ~ 300	1,170	
		301이상	1,330	
영업용	기본(0~30㎡)	23,470		
	초과	31 ~ 50	910	
		51 ~ 100	1,050	
		101 ~ 300	1,350	
		301이상	1,610	
육탕 1종	기본(0~200㎡)	126,460		
	초과	201 ~ 300	610	
		301 ~ 500	780	
		501 ~ 600	990	
		601이상	1,240	
육탕 2종	기본(0~200㎡)	128,800		
	초과	201 ~ 500	920	
		501 ~ 1000	1,120	
		1001이상	1,420	

신·구 대비표

현			개 정 (안)				
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	
업종별		요금 (원)	업종별		요금 (원)		
구분	단계별		구분	단계별			
가정용	기 본(0~10㎡)	2,640	가정용	기 본(0~10㎡)	3,690		
	초 과	11~20		420	초 과	11~20	580
		21~30		540		21~30	750
		31~40		680		31~40	950
		41~50		820		41~50	1,140
		51이상		910		51이상	1,270
업무용	기 본(0~20㎡)	8,980	업무용	기 본(0~20㎡)	12,570		
	초 과	21~50		540	초 과	21~50	750
		51~100		670		51~100	930
		101~300		840		101~300	1,170
		301이상		950		301이상	1,330
영업용	기 본(0~30㎡)	16,770	영업용	기 본(0~30㎡)	23,470		
	초 과	31~50		650	초 과	31~50	910
		51~100		750		51~100	1,050
		101~300		970		101~300	1,350
		301이상		1,150		301이상	1,610
육탕1종	기 본(0~200㎡)	90,330	육탕1종	기 본(0~200㎡)	126,460		
	초 과	201~300		440	초 과	201~300	610
		301~500		560		301~500	780
		501~600		710		501~600	990
		601이상		890		601이상	1,240
육탕2종	기 본(0~200㎡)	92,000	육탕2종	기 본(0~200㎡)	128,800		
	초 과	201~500		660	초 과	201~500	920
		501~1000		800		501~1000	1,120
		1001이상		1,020		1001이상	1,420